

#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인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5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30일
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종무, 이호대, 김경우, 김혜련,  
권수정, 신정호, 김수규, 전병주,  
고병국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 이에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차별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3조 신설).

나. 감염병 병력자에 관한 사회복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34조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차별금지) ①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·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4조(사회복귀 지원 등) ①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3조(차별금지) ①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·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4조(사회복귀 지원 등) ①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분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</p>

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(차별금지) 제2항 신설에 따른 안내와 홍보비용, 제34조(사회복지 지원 등) 제1항 신설에 따른 매뉴얼 작성 및 배포비용 발생
  - 제33조(차별금지) 제1항은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이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하고, 제34조(사회복지 지원 등) 제3항의 본청 및 산하직원 교육비용도 감염병 병력자의 발생빈도와 교육 수요 등을 예측하기 힘들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 - 제34조(사회복지 지원 등) 제4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하며 제5항은 사업의 직접 수행을 전제로 추계하였으므로 비용발생과 무관함
  - 제34조(사회복지 지원 등) 제2항의 신설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트라우마센터(서울 1개소),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(25개소), 서울심리지원센터(3개소) 등 기존 자원 활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≒ 800,0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800,000천원으로 연평균 160,0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할 수 있으며, 물가상승률 미반영
  -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비용의 경우,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유사 성격의 타 사업 예산을 참고하여 연 120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   - \* 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 : 120백만원(2019년) / 320백만원(2020년)
    - 금연사업비 중 금연홍보물 제작비용 : 50백만원(2019년)
    -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중 홍보 및 교육지원 비용 : 90백만원(2019년, 2020년)
  - 사회복지 지원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비용도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유사 성격의 타 사업 예산을 참고하여 연 40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\*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예방센터 사업 중 ‘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매뉴얼’ 사업비  
: 41백만원(2020년)

○ 상세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안내와 홍보 비용 (조례안 제33조제2항)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600,000
	매뉴얼 작성, 배포 비용 (조례안 제34조제1항)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200,000
	소계(b)	160,000	160,000	160,000	160,000	160,000	800,000
□ 총 비용(b-a)		160,000	160,000	160,000	160,000	160,000	800,000

○ 안내, 홍보 비용 ≒ 600,0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안내, 홍보 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간 안내, 홍보 비용  
= 120,000천원 × 1식  
= 120,000천원

○ 매뉴얼 작성, 배포 비용 ≒ 200,0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매뉴얼 제작, 배포 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간 매뉴얼 작성, 배포 비용  
= 40,000천원 × 1식  
= 40,0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 
담당관  
정책조사팀장  
주무관

예산정책담당관  
남승우  
여차민  
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